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063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장동찬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찬

변론 종결2023. 3. 23.

판결 선고2023. 4.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22.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2. 3. 11. 접수 제149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3.부터 2022. 3. 4.까지 4회에 걸쳐 D회사의 대표자인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E	F	G	H
보증내용	보증금액	20,000,000원	30,000,000원	25,000,000원
보증일자	2017. 12. 13.	2019. 11. 28.	2020. 6. 8.	2022. 3. 4.
보증기한	2022. 12. 9.	2024. 11. 20.	2025. 6. 5.	2027. 2. 23.

나.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고 I 으로부터 2017. 12. 13. 20,000,000원, 2019. 11. 28. 30,000,000원, 2020. 6. 8. 25,000,000원, 2022. 3. 4.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22. 3. 8.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8. 18. I에 63,856,8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등 664,517원을 상계처리하여 대위변제잔액은 63,192,292원이 되었다.

라.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J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21. 1. 13.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310,307,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2022.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22. 3. 8. B의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I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의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5, 6, 8 내지 11,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시가감정축탁 결과, 이 법원의 L, M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적극재산

1	이 사건 각 부동산	490,581,000원
2	포항시 남구 N 창고용지 386㎡	162,768,000원
3	포항시 남구 N 지상건물	
4	포항시 북구 ○대 109.4㎡ 중 1/2지분	113,634,500원
5	포항시 북구 ○ 지상건물 중 1/2지분	

나) 소극재산

1	T	63,150,000원
2	P조합	51,000,000원
3	Q조합	130,000,000원
4	R회사	6,000,000원
5	M 주식회사 S 지점	248,000,000원
6	I	182,054,794원
7	피고	67,589,580원

2) 사해행위의 성립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시기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6. 18.부터 2022. 2. 12.까지 'U회사'라는 상호로 자전거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B에게 자전거 및 관련 비품을 납품하여, 2022. 2. 12. 현재 B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67,589,580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2022. 3. 11.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당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M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8,000,000원을 인수하였는바, 결국 B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위 각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310,000,000원은 B이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21. 1. 1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완납한 금원인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2019. 12. 2. 개시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 시기나 매각기일에서의 유찰 등을 감안하면 위 금액이 위 각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이 법원의 시가감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시가를 490,581,000원으로 평가한 점, ③ 피고는 2015.

6.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와 거래하였으나 2022. 2. 12. 이후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인 2022. 2. 21. B의 다른 채권자인 T가 B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하경

별지